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4호 2020. 3. 30.(월)

조 례

○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 목포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5
○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9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1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14
○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1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9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31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34
○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37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48
○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52
○ 목포시 건축물 철고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55
○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57
○ 목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65
○ 목포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77
○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82
○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105
○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8

규 칙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12
○ 목포시 경로당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26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129
○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33

공 고

○ 어업권 포기신고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134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5

회람							
----	--	--	--	--	--	--	--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37 호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적극행정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38 호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39 호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0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제안에 응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국·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에너지경제
2. 관광문화
3. 해양수산
4. 도시환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소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과장이 개최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9조(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1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자동차등록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게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
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
4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
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
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
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
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
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
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 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게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2 호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또는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이하“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성실납세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함은 납기 내에 「지방세법」 및 「목포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의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지방세에 부가된 국세(이하 “지방세 부가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연세액 1천만원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지방세 부가세를 포함 연간 1천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를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자”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중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제2호의 경우는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바. 개인납세자중 고액순으로 상위 5명에 대한 감사패 증정”을 “바. 개인납세자중 감사패 증정”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연사박물관 무료입장, 공원 및 공영(호남)주차장의 1일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를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 할 수 있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원내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중복 증정 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권을 교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성실납세자인증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을 목포시 지방세 성실납
세자로 인증합니다.



목 포 시 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공 지 사 항 ■

본 인증표를 소지하신 분은「목포
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
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① 공원내 주차장 및 시 공영주차
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② 목포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
할 수 있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

이라 함은 「목포시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모범적으로 송달한 자를 말한다.

3. 4. (생략)

제3조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

① (생략)

1. (생략)

2. 지방세 부가세를 포함 연간 1천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

3.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

②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매 회 20명 이내를 전산 추첨으로, 제2호의 경우는 해당자 전원을, 제3호의 경우는 총 송달비율 및 정확도, 업무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연 3회 종합평가를 통해 15명 이내를 선정한다.

③ (생략)

제4조 (지원내용) ①성실납세자들에게 지원 또는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제3조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자

3. <삭 제>

②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중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제2호의 경우는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지원내용) ①-----

-----.

1. (생 략)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가. ~ 마. (생 략)

바. 개인납세자중 고액순으로
상위 5명에 대한 감사패 증정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말표창 또는 인증권을 지
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
을 소지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내용과 같이 자연사박물관 무
료입장, 공원 및 공영(호남)주차
장의 1일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1
회 이상 중복 증정을 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개인납세자중 <삭 제>
감사패 증정

3. <삭 제>

②-----
-----자연
사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원내 주차
장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을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
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수 없으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중
복 증정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성실납세자인증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을 목포시 지방세 성실납세
자로 인증합니다.

2007. . .



목 포 시 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성실납세자인증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을 목포시 지방세 성실납세
자로 인증합니다.

. . .



목 포 시 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뒷면)

■ 공 지 사 항 ■

본 인증표를 소지하신 분은「목포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① 공원내 주차장 및 시 공영주차장
1일 2시간 무료주차
- ②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 할
수 있습니다.

(뒷면)

■ 공 지 사 항 ■

본 인증표를 소지하신 분은「목포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① 공원내 주차장 및 시 공영주차
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② 목포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
할 수 있습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3 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원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직원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44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회”를 “4회”로,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일 (분할 불가)”를 “10일 (2회 분할 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 (2회)”를 “15일 (3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 (3회)”를 “20일 (4회)”로 한다.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일수란 및 같은 표 일수란 중 “2”를 각각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u>3회</u> 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u>있다</u> .(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⑬ ----- ----- ----- ----- ----- ----- ----- ----- <u>4회</u> ----- --- <u>있다</u> .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u>5일</u> (분할 불가)	1. ----- <u>10일</u> (<u>2회</u> 분할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u>10일</u> (<u>2회</u> 분할 가능)	2. ----- <u>15일</u> (<u>3회</u> -----
3. 30년 이상 : <u>15일</u> (<u>3회</u> 분할 가능)	3. ----- <u>20일</u> (<u>4회</u> ----- --
⑭ · ⑮ (생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개정 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5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59명” 을 “1,29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36명” 을 “1,273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96	1,296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275	1,275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이하	1,197	1,197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1,259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총수) ----- ----- ----- <u>1,296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36명</u>	1. ----- <u>1,273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계</td><td><u>1,259</u></td><td colspan="5"><u>1,259</u></td></tr><tr><td>정무직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u>1,238</u></td><td colspan="5"><u>1,238</u></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9</td><td>4</td><td>1</td><td>1</td><td>3</td><td></td></tr><tr><td>5급</td><td>68</td><td>24</td><td>3</td><td>3</td><td>15</td><td>23</td></tr><tr><td>6급 이하</td><td><u>1,160</u></td><td colspan="5"><u>1,160</u></td></tr><tr><td>연구직계</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지도직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59</u>	<u>1,259</u>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계	<u>1,238</u>	<u>1,238</u>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 이하	<u>1,160</u>	<u>1,160</u>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계</td><td><u>1,296</u></td><td colspan="5"><u>1,296</u></td></tr><tr><td>정무직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u>1,275</u></td><td colspan="5"><u>1,275</u></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9</td><td>4</td><td>1</td><td>1</td><td>3</td><td></td></tr><tr><td>5급</td><td>68</td><td>24</td><td>3</td><td>3</td><td>15</td><td>23</td></tr><tr><td>6급 이하</td><td><u>1,197</u></td><td colspan="5"><u>1,197</u></td></tr><tr><td>연구직계</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지도직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96</u>	<u>1,296</u>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계	<u>1,275</u>	<u>1,275</u>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 이하	<u>1,197</u>	<u>1,197</u>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59</u>	<u>1,259</u>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계	<u>1,238</u>	<u>1,238</u>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 이하	<u>1,160</u>	<u>1,160</u>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96</u>	<u>1,296</u>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계	<u>1,275</u>	<u>1,275</u>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 이하	<u>1,197</u>	<u>1,197</u>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46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 관 시 설 이 용 료 (제16조 관련)

구분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3시간	97,000원	65,000원	1일 250,000원
4시간	120,000원	80,000원	
8시간	170,000원	110,000원	

- (주) - 1일 최대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이용료는 냉·난방 사용료, VAT 포함
 - 기획전시실은 4일 이상부터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본문>

현행	개정안
제1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다목적홀</u>	제12조(대관범위)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대관시설이용료(제16조 관련)		[별표 1] 대관시설이용료(제16조 관련)	
구분	단위	이용료	비고
기획전시실	1일	50,000원	
세미나실	1일	30,000원	
다목적강당	1일	70,000원	
다목적홀	1일	30,000원	
(주) -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 1일 사용으로 간주) - 초과 사용할 경우 매 시간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 냉·난방 사용료 별도(3,500원/시간당)			

구분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3시간	97,000원	65,000원	1일 250,000원
4시간	120,000원	80,000원	
8시간	170,000원	110,000원	
(주) - 1일 최대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이용료는 냉·난방 사용료, VAT 포함 - 기획전시실은 4일 이상부터 가능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7 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체육회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 -----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위탁) ① <u>시장은 제5조</u>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9조(학교체육의 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위탁) ① <u>시장은 제4조</u>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0조의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u> ① <u>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u> 1. <u>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2. <u>관서운영 기본경비</u> 3. <u>사무시설 임차료</u> 4. <u>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u>

<신 설>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4(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

체육회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

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8 호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목포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목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부문)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본상과 남도작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 및 요건) 시상대상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목포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분야 관련 교수
5.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수상자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예비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으로 각각 운영한다.

③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2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평 등의 심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매년 목포문학제 행사 기간에 하고, 시상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49 호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를 “목포활어회플라자”로, 같은 조 제2호 중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목포건어물젓갈센터”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를 “목포활어회플라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해양수산복합센터”를 “목포활어회플라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목포건어물젓갈센터”로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사업) ----- ----- -----.
1. <u>목포 해양수산 복합센터</u> 운영 · 관리에 관한 사업	1. <u>목포활어회플라자</u> ----- -----
2. <u>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u> 운영 · 관리에 관한 사업	2. <u>목포건어물젓갈센터</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 ①·② (생략)	제17조(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입점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1. <u>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u> 의 우선 입점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입점시에만 적용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 다목의 희망업종이란 <u>해 양수산복합센터</u> 의 직판장과 식당코너를 말하며, 동일업종 이란 활어수산물의 즉석판매 제조업자의 횃집을 말한다.	1. <u>목포활어회플라자</u>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 다목의 희망업종이란 <u>해 양수산복합센터</u> 의 직판장과 식당코너를 말하며, 동일업종 이란 활어수산물의 즉석판매 제조업자의 횃집을 말한다.	라. ----- 목 <u>포활어회플라자</u> ----- ----- ----- -----.
2. <u>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u> 의 우선 입점자는 건·해산물 및 젓갈관 련 등록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u>목포건어물젓갈센터</u> ----- ----- -----.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0 호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및 철거공사의 책임자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 수칙 등) ① 시장은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1 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제14조의2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 2012. 6. 11, 2017.10.12., 2020.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 ----- -----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생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한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개정 2012. 6. 11, 2017.10.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 설 물</th><th>설 치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1. 위락시설</td><td>○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td></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td><td>○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td></tr> <tr> <td>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td><td>○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td></tr> <tr> <td>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td><td>○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td></tr> <tr> <td>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td>○「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td></tr> <tr> <td>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td><td>○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td></tr> <tr> <td>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td><td>○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td></tr> <tr> <td>8. 그 밖의 건축물</td><td>○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td></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 설 물</th><th>설 치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1. 위락시설</td><td>○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td></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td><td>○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td></tr> <tr> <td>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td>○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td></tr> <tr> <td>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td><td>○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td></tr> <tr> <td>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t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td></tr> <tr> <td>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td><td>○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td></tr> <tr> <td>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td><td>○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td></tr> <tr> <td>8. 창고시설</td><td>○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td></tr> <tr> <td>9. 학생용 기숙사</td><td>○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td></tr>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td>○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td></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현행	개정안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 및 「전라남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내의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이하에서 같다.)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차로 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비 고〉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설치기준으로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조정한다.

12.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퍼센트까지만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주차면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3. 다음 각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철거하여 다음 각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자주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으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시설물로서 다른형식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2분의 1을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본다.

가. 2단 경사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나. 2단 수동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다. 단순승강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14. 기계식주차장중 수동식은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면수로 산정한다.

15.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2 호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가.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 나. 저상버스 운영비
 - 다.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지원
 - 라. 시장 및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장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인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용역 결과 의회보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를 준용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 교통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교통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명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관리

제21조(보조금의 조정·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및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4조(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목포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 및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3 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목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확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목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4 호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한다.

제명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
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기능 및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 부의장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된다.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계 및 사업 감사 각 1인을 두고 매년 협의회 재정 및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기업체 임직원, 각분야의 전문가

나.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 협의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사무국 설치 · 운영등) ① 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밖의 사무국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4조(회의 등)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2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유엔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발전 가능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목포시 녹색목포21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u>	<u>목포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 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 (기본이념) <u>협회의의 기본이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u>	제2조(기본이념) <u>인간</u>----- ----- -----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것을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목포21”이란 목포시·시민·지역기업이 주체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의 행
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
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지역기업·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함께 실
천해야 할 과제인 지방의제21
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
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
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생
략)

제4조 (시장의 책무) ①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
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녹색목포21을 수립하고 협의회
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
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
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
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
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
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
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
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
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
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 하며 -----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녹색목포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녹색목포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으로서 녹색목포 21(이하 “녹색목포 21”이라 한다)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녹색목포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녹색목포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③ -----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목포
시의 ----- 하
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 계획-----.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기능) -----
-----.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 <삭 제>

6.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
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
명, 부의장 3명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
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녹색
목포21의 실천을 위해 환경수도
사업단장, 환경보호과장, 공원
녹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5.(현행 6호를 5호로 변경) ---
--- 지속가능발전-----

제7조(구성) ① ----- 공동의장
2명, 부의장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인 내외----- 3명
이내-----.

② 공동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
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된다.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
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계 및 사업 감사 각 1인을
두고 매년 협의회 재정 및 각
종사업 등에 관하여 분야별로

제8조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기업체 임직원, 각분야의 전문가

나.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협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원의 해촉 요구가 있을 때

<신 설>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

--.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사무국) 협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회에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
-----.

② -----
----- 관한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회의) ①시장 또는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주재는 의장이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으로 따로 -----
----.

<삭 제>

제12조(자문위원)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사무국 설치 · 운영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및 그밖의 사무국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신 설><신 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

-----.

④ ----- 제3항-----

-.

제14조(회의 등)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다음 해-----

----- 소요예산내역-----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협회의의 세부 운영규정 등)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 운영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

----- 조
사·연구-----
----- 관계 전문가
및 -----.

제16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

제17조 (재정의 지원)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생 략)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회의 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생 략)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시작 전에 지급

②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

---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지속가능발전목표-----

3.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사업개시 -----

② 상임의장-----

-----.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

제1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생략)

제2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독) -----

----- 공무원으-----
----- 확인·검사하게 -----.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진) ----- 지구환경보전-----
----- 유엔등 ----- 전국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등과-----
-----.

제29조(시행규칙) ----- 시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
-----.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5 호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목포시 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5조(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4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6 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8.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2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정신건강복지센터

3. 목포시의회 의원

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협의체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0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목포시 시군세 기본조례」”를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정사유”를 “변경사유”로, “(경정)”을 “(변경)”으로, “부과취소
· 경정처분”을 “부과취소 · 변경처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 <u>목포시 시세세 기본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 ----- ----- ----- ----- 「 <u>목포시 시세 기본조례</u> 」 ----- ----- -----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u>경정사유</u>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u>경정</u>)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u>부과취소·경정처분</u> 내역을 첨부하여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 ----- <u>변경사유</u> ----- ----- (<u>변경</u>) ----- ----- <u>부과취소·변경처분</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

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생략)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한국거래소-----

--

3. 한국거래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10호서식]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목포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목 포 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목포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목포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관인생략

■ [별지 제12호서식]

목포시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현행

■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illegible]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안

■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변경처분 내역

[illegible]

※ 부과취소 또는 변경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설>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0호서식]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본,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본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목포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신청인(청구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1호서식]

목 포 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 충족)의 사유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목포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목포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관인생략

목포시 규칙 제 1791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5호 중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한다.”를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 (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로 한다.

제 4조 3호 중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건립한 경우”를 “공동주택 경로당 건립의 경우”로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로당 지원) 1. ~ 4. 생략 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u>예산 범위</u> <u>내에서 개인건물(공동주택 포함)</u> <u>경로당에 도배, 장판, 싱크대에</u> <u>한해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u> <u>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개보수</u> <u>사업은 예외로 한다.</u>	제2조(경로당 지원) 1. ~ 4. 현행과 같음 5. -----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 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 (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1. ~ 2. 생략 3. 「주택법」또는「건축법」에 따라 <u>공동</u> <u>주택의 경로당을 건립 할 경우</u>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1. ~ 2. 생략 3. -----공동 주택 건립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경로당 지원물품				[별표 1] 경로당 지원 물품		
구 분	지원 가능 품목	지원불가 품목	비 고	구 분	지원 가능 품목	비고
건강·운동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안마의자, 런닝머신등		건강·운동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전자제품	냉장고(600 l 이하),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감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정수기 등		전자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렌지	
※ 운동기구 : 잦은 고장, 유지관리 어려운 건강기구 및 불안정한 운동기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기타품목 지원불가 사유 :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속 요구되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쇼파 등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물품은 지원 제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2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상임단원 임금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0. 4. 1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기획문화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관광문화체육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 5] <개정 2020. 3. 30.>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 향 악 단	지 휘 자		
	부지휘자	1,108,700	
	악 장	923,300	
	단 무 장	817,700	
	수석연주	817,700	
	정 단 원	738,700	
	준 단 원	738,700	
	연구단원	633,100	
합 창 단	지 휘 자	533,000	
	단 무 장	1,055,200	
	반 주 자	869,500	
	단 원	554,000	
무 용 단	안 무 자	533,000	
	훈 련 장	1,055,200	
	단 원	844,20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533,000	
	단 무 장	1,427,500	
	반 주 자	844,200	
	안 무 자	586,300	
연 극 단	연 출 자	586,300	
	단 무 장	1,655,000	
	단 원	844,200	

신·구조문 대비표((별표5)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 향 악 단	지 휘 자			교 향 악 단	지 휘 자		
	부지휘자	1,108,700			부지휘자	1,108,700	
	악 장	923,300			악 장	923,300	
	단 무 장	817,700			단 무 장	817,700	
	수석연주	817,700			수석연주	817,700	
	정 단 원	738,700			정 단 원	738,700	
	준 단 원	738,700			준 단 원	738,700	
	연구단원	633,100			연구단원	633,100	
합 창 단	지 휘 자			합 창 단	지 휘 자		
	단 무 장	1,055,200			단 무 장	1,055,200	
	반 주 자	844,200			반 주 자	869,500	
	단 원	554,000			단 원	554,000	
무 용 단	안 무 자	533,000		무 용 단	안 무 자	533,000	
	훈 련 장	1,055,200			훈 련 장	1,055,200	
	단 원	844,200			단 원	844,20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단 무 장	1,385,900			단 무 장	1,427,500	
	반 주 자	844,200			반 주 자	844,200	
	안 무 자	533,000			안 무 자	586,300	
연 극 단	연 출 자	533,000		연 극 단	연 출 자	586,300	
	단 무 장	1,655,000			단 무 장	1,655,000	
	<신 설>	844,200			단 원	549,000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3 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항 중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를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선정심사 및 통지) 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1조 (선정심사 및 통지) ①----- ----- -----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 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목포시 공고 제2020 - 497호

어업권 포기신고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3. 30.

목 포 시 장

□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품종	면허기간	어업권자		포기사유	비고
				주소	성명		
10057	해조류양식	김	'18.12.14 '20.12.13	목포시 연산동	광산 어촌계	대체개발	10059

□ 어업면허 처분 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종류 (어업의방법)	어장의 위치 및 구역	양식물종류	면허 기간	어업의 시 기	면허 일자	어업권자
10059	해조류양식 (수하식)	목포시 연산동 광산지선	김	'20.03.27 '20.12.13	9.1- 5.31	'20.3.27	광산 어촌계

※ 제한 또는 조건

- 향후 국가어항(삽진항)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자진 철거한다.

목포시 공고 제2020-487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11건)**

- 유희토지 및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 규정(안 제1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규정(안 제13조의3)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규정(안 제15조의2)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조문 각호 변경(안 제17조의3)
-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규정(안 제23조의2)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문 각호 변경(안 제24조)
-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규정(안 제48조)
-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안 제50조)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규정(안 제51조)
-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타법 용어 정의 변경 반영(안 제54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타법 명칭 변경 반영(안 제5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13조, 제15조의2, 제48조, 제50조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 안 제13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2, 제24조, 제48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7.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8.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0. ~ 4. 20.(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20.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계획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만 제곱미터”를 “5천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1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의2제8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를 “경우로서”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가목 중 “시”를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으로,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를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를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으로 한다.

제50조 중 “영 제84조제6항제1호”를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를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로,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따라”를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으로, “의 용적률에 대하여는”을 “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으로, “용적률 이외에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

을”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7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4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생 략) 1.~8. (생 략)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 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 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③ <신 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② ----- ----- 5천 제곱미터 ----- ----- ----- -----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1.~2.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신 설>	제15조의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u>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u> 1.~2.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③ <u>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u> 1.~3. (생 략)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u>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u>-----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u>----- ----- ----- 1.~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생 략) 1.~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 ----- <u>경우로서</u> ----- ----- ----- -----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10. <신 설></u> <u>11. <신 설></u>	<u>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u> <u>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2. (생 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4. (생 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 ----- ----- ----- ----- ----- ----- 1.~4. (생 략)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 략) 1. (생 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5.~7. (생 략) 8. (생 략) 가.~다.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가.~다. (생 략) 11. (생 략)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 5.~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u>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u>)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생 략)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가. ----- -----<u>(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u> ----- <u>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u>) ----- 나. (현행과 같음) 다. ----- -----<u>(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u> -----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u>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u> 1. <신 설> 2. <신 설>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u> 2.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u>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1.~16.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이외에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1.~2. (생 략)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 ----- ----- 해당하는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시장은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2. (생략)

② (생략)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이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제7장 보칙

〈신설〉

〈삭제〉

제8장 보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